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200074**  
신청인: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피신청인 : **otchanggo**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두산중공업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블도로 22  
대리인 : 특허법인 신세기 (변리사 김종윤)

피신청인: otchanggo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0-34

분쟁 도메인이름은 "두산중공업.com" 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한국정보인증(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16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 8. 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 8. 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 8. 3.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 8. 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 8. 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 8. 3.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 8. 23.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 8. 2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 통지를 2012. 8. 24.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2. 8. 24. 센터는 서정일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 8. 27.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 8. 27.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2012. 8. 27. 피신청인은 센터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센터는 서정일 조정위원의 허락을 얻어 피신청인이 2012. 8. 29. 제출한 답변서를 접수하고, 2012. 8. 31. 이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이 답변서에 대해 7일 이내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주)두산은 1933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두산” “DOOSAN” 및

“斗山”의 상표권자이다. 이 사건 인터넷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두산”은 세계적인 기업인 (주)두산의 상호이고, “두산그룹”은 (주)두산을 포함한 수많은 계열사를 가진 두산그룹의 통칭이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로서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공업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산그룹에서는 그들의 상호이자 그룹명칭인 “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등록해왔으므로 “두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은 “두산” 또는 “두산그룹”에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등록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자에 의하여 운영되어 사용될 경우 이는 결국 신청인 또는 두산그룹의 입장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신청인은 물론 두산그룹의 기업 이미지의 실추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두산중공업.com>을 등록한 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사이트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갑제4호증)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만 나열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피신청인은 “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신청인 명의로 대한민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지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두산그룹에서는 그들의 상호이자 그룹 명칭인 “두산”을 1983

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등록해왔고 “두산” 및 “doosan” 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한글 및 영문 도메인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두산” 의 상표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은 “두산그룹” 과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두산” 의 이름을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은 “두산” 을 상표나 서비스로 특허청에 등록 받거나 등록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두산중공업.com>은 신청인 상호의 요부인 “두산중공업” 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의 등록상표인 “두산” 과도 식별력이 없는 “.com” 을 제외하면 그 요부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여 신청인의 신뢰도와 인지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3) 기업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따라 gTLD인 “.com” 을 상호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고객들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을 시도하였는데 신청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성인물 사이트로 접속된다면 신청인은 물론 두산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신청인 및 그룹 전체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등록행위는 매우 심각한 영업방해에 해당하고 영업상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두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도메인 이름을 수집하게 되었으나 그 목적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 이외에도 30개 정도의 두산그룹과 관련된 한글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해 정당하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이전 신청을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두산”은 세계적인 기업인 (주)두산의 상호이고, “두산그룹”은 (주)두산을 포함한 수많은 계열사를 가진 두산그룹의 통칭이다. 신청인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들의 상호로 (주)두산중공업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 <두산중공업.com>은 신청인 상호의 요부인 “두산중공업”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의 등록상표인 “두산”과도 식별력이 없는 “.com”을 제외하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떠한 개연성이나 정당한 사업목적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인용상표의 상태 및 인지도, 피신청인이 다른 보통명칭을 등록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사용”이란 반드시 도메인이름을 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그 상태를 지속 지속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두산중공업.com>을 신청인에게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

서정일  
1인 조정인

결정일: 2012년 9월 19일